

2015. 12. 04. 10:00

제239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6년도 출연금 출연 계획안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임 동 화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1. 제 안 자 : 달성군수****2. 제안이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원 조정과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
|-----------|---------|---------|--------|
| 총 계       | 587,000 | 530,000 | 57,000 |
| 일 반 회 계   | 571,600 | 514,800 | 56,800 |
| 특 별 회 계   | 15,400  | 15,200  | 200    |
| 의료급여기금    | 397     | 397     | 0      |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 7,300   | 7,300   | 0      |
| 기반시설      | 110     | 109     | 1      |
| 치수사업      | 7,437   | 7,259   | 178    |
| 농공지구관리    | 156     | 135     | 21     |

##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장 관 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총 계              |            | 587,000 | 530,000 | 57,000 | 10.75  |
| 일<br>반<br>회<br>계 | 계          | 571,600 | 514,800 | 56,800 | 11.03  |
|                  | 지방세수입      | 104,146 | 100,441 | 3,705  | 3.69   |
|                  | 세외수입       | 22,485  | 23,969  | △1,484 | △6.19  |
|                  | 경상적세외수입    | 17,018  | 17,005  | 13     | 0.07   |
|                  | 임시적세외수입    | 5,467   | 6,964   | △1,497 | △21.50 |
|                  | 지방교부세      | 140,518 | 138,104 | 2,414  | 1.75   |
|                  | 조정교부금등     | 31,586  | 30,578  | 1,008  | 3.30   |
|                  | 보조금        | 173,775 | 172,491 | 1,284  | 0.74   |
|                  | 국고보조금등     | 116,354 | 115,504 | 850    | 0.74   |
|                  | 사·도비보조금등   | 57,421  | 56,987  | 434    | 0.76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99,090  | 49,217  | 49,873 | 101.33 |
|                  | 계          | 15,400  | 15,200  | 200    | 1.32   |
| 특<br>별<br>회<br>계 | 세외수입       | 393     | 255     | 138    | 54.40  |
|                  | 경상적세외수입    | 385     | 252     | 133    | 53.26  |
|                  | 임시적세외수입    | 8       | 3       | 5      | 139.32 |
|                  | 보조금        | 351     | 326     | 25     | 7.60   |
|                  | 국고보조금등     | 281     | 261     | 20     | 7.60   |
|                  | 사·도비보조금등   | 70      | 65      | 5      | 7.59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4,656  | 14,619  | 37     | 0.25   |

## 3) 회계별 세출총괄

##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 분야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 총 계     | 587,000 | 530,000 | 57,000 | 10.75  |
| 일반회계 | 계       | 571,600 | 514,800 | 56,800 | 11.03  |
|      | 일반공공행정  | 23,961  | 24,005  | △44    | △0.18  |
|      | 공공질서및안전 | 9,739   | 10,519  | △780   | △7.42  |
|      | 교육      | 8,475   | 7,291   | 1,184  | 16.23  |
|      | 문화및관광   | 25,496  | 24,649  | 847    | 3.44   |
|      | 환경보호    | 10,169  | 10,090  | 79     | 0.78   |
|      | 사회복지    | 148,262 | 146,916 | 1,346  | 0.92   |
|      | 보건      | 11,371  | 10,756  | 615    | 5.72   |
|      | 농림해양수산  | 43,233  | 42,944  | 289    | 0.67   |
|      | 산업·중소기업 | 1,174   | 1,140   | 34     | 2.99   |
|      | 수송및교통   | 89,885  | 89,572  | 313    | 0.35   |
|      | 국토및지역개발 | 45,953  | 46,372  | △419   | △0.90  |
|      | 과학기술    | 0       | 140     | △140   | 순감     |
|      | 예비비     | 73,819  | 21,010  | 52,809 | 251.36 |
|      | 기타      | 80,063  | 79,396  | 667    | 0.84   |
| 특별회계 | 계       | 15,400  | 15,200  | 200    | 1.32   |
|      | 환경보호    | 7,300   | 7,300   | 0      | 0.00   |
|      | 사회복지    | 351     | 326     | 25     | 7.60   |
|      | 국토및지역개발 | 7,447   | 7,247   | 200    | 2.76   |
|      | 기타      | 302     | 327     | △25    | △7.57  |

#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총 계              |           | 587,000 | 530,000 | 57,000 | 10.75  |
| 일<br>반<br>회<br>계 | 계         | 571,600 | 514,800 | 56,800 | 11.03  |
|                  | 인건비       | 56,489  | 56,060  | 429    | 0.76   |
|                  | 물건비       | 29,539  | 29,451  | 88     | 0.30   |
|                  | 경상이전      | 210,773 | 206,735 | 4,038  | 1.95   |
|                  | 자본지출      | 195,506 | 196,280 | △774   | △0.39  |
|                  | 시설비및부대비   | 169,696 | 170,590 | △894   | △0.52  |
|                  | 민간자본이전    | 17,267  | 17,642  | △375   | △2.13  |
|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2,128   | 1,933   | 195    | 10.08  |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396     | 381     | 15     | 3.94   |
|                  | 자산취득비     | 6,019   | 5,734   | 285    | 4.98   |
|                  | 융자및출자     | 10      | 10      | 0      | 0.00   |
|                  | 보전재원      | 290     | 290     | 0      | 0.00   |
|                  | 내부거래      | 868     | 8,085   | △7,217 | △89.27 |
|                  | 예비비및기타    | 78,125  | 17,889  | 60,236 | 336.72 |
|                  | 예비비       | 73,819  | 13,780  | 60,039 | 435.71 |
|                  | 반환금기타     | 4,306   | 4,109   | 197    | 4.78   |
| 특<br>별<br>회<br>계 | 계         | 15,400  | 15,200  | 200    | 1.32   |
|                  | 인건비       | 317     | 317     | 0      | 0.00   |
|                  | 물건비       | 213     | 213     | 0      | 0.00   |
|                  | 경상이전      | 287     | 262     | 25     | 9.44   |
|                  | 자본지출      | 239     | 267     | △28    | △10.49 |
|                  | 시설비및부대비   | 237     | 265     | △28    | △10.57 |
|                  | 자산취득비     | 2       | 2       | 0      | 0.00   |
|                  | 예비비및기타    | 14,344  | 14,141  | 203    | 1.44   |
|                  | 예비비       | 14,298  | 14,070  | 228    | 1.62   |
|                  | 반환금기타     | 46      | 71      | △25    | △34.95 |

## 5. 2015년도 이월사업

### □ 명시이월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건수  | 예산액     | 이월액     | 이 월 사 유                                                    |
|-------|-----|---------|---------|------------------------------------------------------------|
| 합 계   | 227 | 140,182 | 100,185 |                                                            |
| 일반회계  | 227 | 140,182 | 100,185 |                                                            |
| 회 계 과 | 1   | 1,484   | 1,411   | -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공정률 10%                                      |
| 토지정보과 | 1   | 38      | 38      | -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미시행, 정리추경반영                        |
| 사회복지과 | 6   | 1,860   | 1,508   | - 공사기간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br>-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일상감사 등              |
| 농업정책과 | 1   | 160     | 80      | - 공사기간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
| 환 경 과 | 1   | 30      | 29      | - 용역수행기관 선정 지연, 환경부와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및 검토 기간 반영                |
| 청소위생과 | 6   | 5,523   | 532     | - 12월 대행처리 후 다음달(16년1월)에 지출되는 건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예산 이월 후 정산 |
| 건 설 과 | 108 | 70,253  | 54,519  | - 공사기간 미도래<br>- 2015년 1회 추경 보상중<br>-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  |
| 도 시 과 | 35  | 10,013  | 6,964   | - 공사기간 미도래<br>-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                             |
| 안전방재과 | 27  | 25,433  | 15,788  | - 공사기간 미도래<br>-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                       |
| 건 축 과 | 5   | 2,015   | 1,039   | -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공사 추진 지연<br>- 공사기간 미도래 등                |
| 교 통 과 | 5   | 3,148   | 1,848   | - 연간 상시 보수로 업무 연속성 유지<br>- 용역기간 미도래 등                      |
| 공원녹지과 | 13  | 9,324   | 6,058   | - 공사기간 미도래<br>- 민원 미해소로 인한 사업지연 등                          |
| 정책사업과 | 4   | 2,220   | 2,188   | - 용역기간 미도래<br>-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이연 등                            |
| 문화체육과 | 5   | 5,768   | 5,741   | - 개인소유부지 매입협의 부진<br>- 공사기간 미도래 등                           |
| 관 광 과 | 7   | 2,608   | 2,141   | - 전년도 이월액 우선집행<br>- 문화재청 지침시달 지연에 따른 공사이연 등                |
| 건강증진과 | 1   | 250     | 250     | -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
| 다 사 읍 | 1   | 55      | 51      | -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미발주                                  |

## 6. 주요내용

### □ 예산규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00억원 보다 570억원(증 10.75%)이 증가된 5,870억원으로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48억원 보다 568억원이 증액된 5,71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154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738억 1천 9백만원 입니다.

###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천 3백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4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등은  
10억 8백만원이 증액된 315억 8천 6백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에 있어서는  
12억 8천 4백여원이 증액된 1,737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8억원이  
증액된 5,7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 쓰레기 최종처리비(매립장, 소각장) 1억 6천만원
-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8천 2백만원
-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설비 1억 1천 5백만원
- 도로굴착복구비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 4억원
- 달성장학회 출연 5억 1천만원
-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제2주차장 조성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1억 9천여만원
- 현풍 오산~원교간(군도1호선)도로 선형 개량 10억 9천 2백여만원
- 현풍 자모~구지도동간(군도1호선)도로 선형 개량 10억 9천 4백여만원
- 가창 퇴계천지천 정비공사 2억원
- 사문진 나루터~달성습지 간 강변 탐방로 조성사업 3억원
- 과학축전 개최지원 1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 유가 음리 1·2지구 위험사면 정비 8억원
- 현풍 오산 및 구지도동 위험사면 정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억 7천여만원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1억 1천 6백여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8천 2백만원
-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2억 1천 8백만원

- 서재 행복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1천 7백여만원이 증액된 반면,
- 양로시설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1억 6백여만원
-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7억 8천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0억 2천여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여만원, 보조금 2천 4백여만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2014년도 의료급여사업 사용잔액 2천 6백여만원 감액계상하여 증감이 없으며, 이 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등에 사용되고 의료급여사업비등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천 7백여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에 6천 7백여만원 감액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1백 7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 6백여만원,  
순세계잉여금 9천 9백여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1억 7천 8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2천여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수선 보수비 2천 8백여만원 감액과  
예비비 4천 9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 종합검토의견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인건비나 법정경비의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570억원 증액편성 계획으로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37억, 지방교부세 24억, 조정교부금 10억, 보조금 12억, 잉여금 498억원 등입니다. 이는 금년도 5월에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 530억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행복달성을 위해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새로운 달성 100년의 희망을 위해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발생하면 조속한 기간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계획되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로 6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용도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나 예비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재원이 군정을 위한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보여집니다.

-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대상사업 227건의 총예산액 1,401억 8,187만 5천원 중 집행액 391억 508만 5천원과 불용액 8억 9,133만원을 제외한 1,001억 8,54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의 예산대비 71.4%가 집행되지 못하고  
(2014년도 66.7%보다 더 늘어난 규모) 이월되는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며,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과 같이 연도내에  
집행가능액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월예산의  
발생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방문객 및 직원들의 차량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군청사 주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군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 4. 주요내용

- 군청사 주차장 확장사업
  - 대지위치(매입대상 토지) :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28-1 등 6필지
  - 관련 지번 : 1328-2, 1328-3, 1326-2, 1326-3, 1326-4
  - 사업기간 : 2016. 2월 ~ 2016. 11월
  - 대지면적 : 2,304m<sup>2</sup>
  - 사업규모 : 주차장 면적 2,304m<sup>2</sup>, 주차면수 90면정도
  - 사 업 비 : 2,890백만원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붙임 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sup>2</sup>,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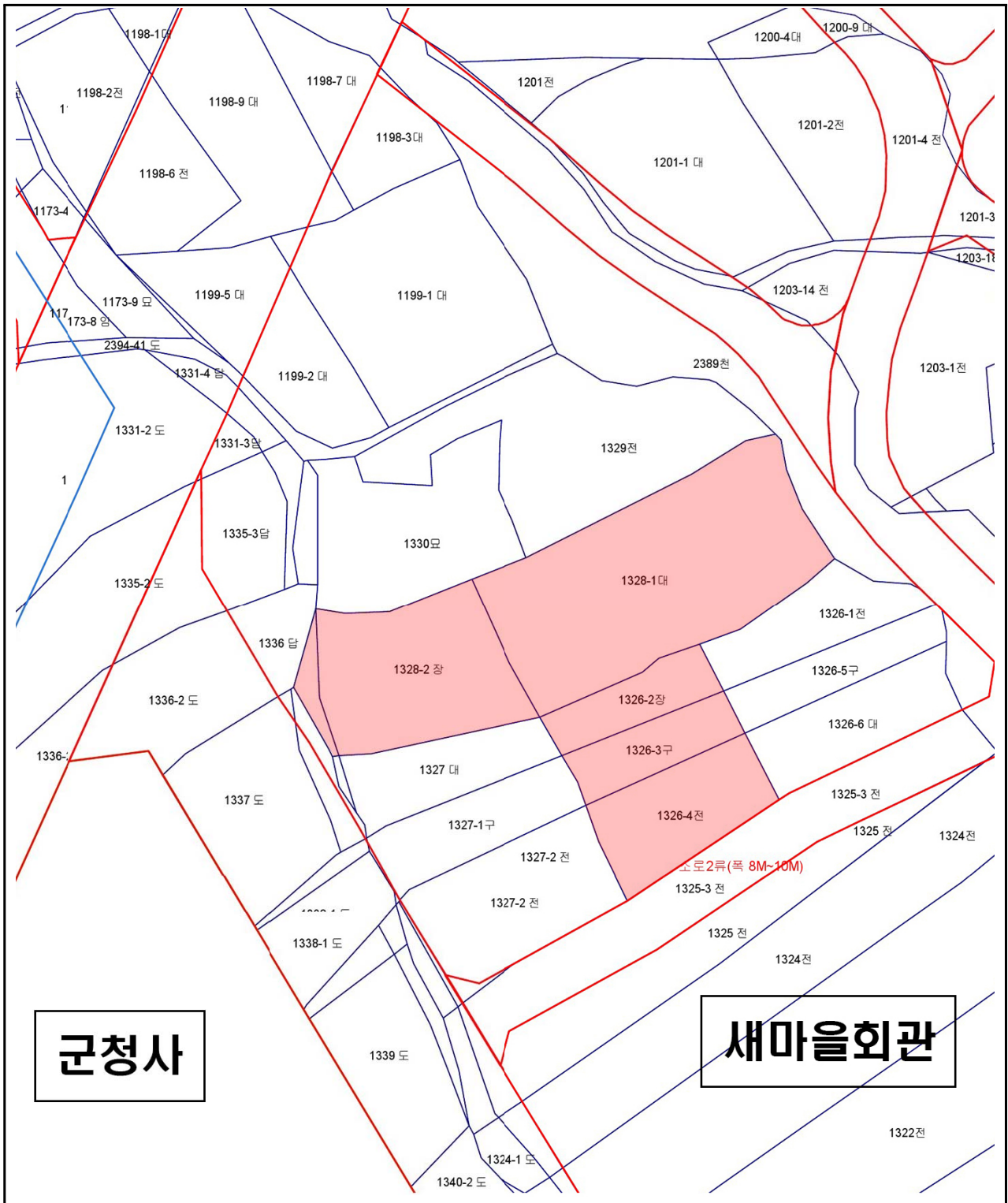
| 구 분    |      |    | 당 초        |    |    | 금 회        |         |         | 계          |         |         |
|--------|------|----|------------|----|----|------------|---------|---------|------------|---------|---------|
|        |      |    | 건수<br>(필지) | 수량 | 금액 | 건수<br>(필지) | 수량      | 금액      | 건수<br>(필지) | 수량      | 금액      |
| 취<br>득 | 계    |    |            |    |    | 9          | 3,144.5 | 928,172 | 9          | 3,144.5 | 928,172 |
|        | 1.매입 | 토지 |            |    |    | 6          | 2,304   | 743,813 | 6          | 2,304   | 743,813 |
|        |      | 건물 |            |    |    | 3          | 840.5   | 184,359 | 3          | 840.5   | 184,359 |
|        | 2.교환 |    |            |    |    |            |         |         |            |         |         |
|        | 3.기타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처<br>분 | 계    |    |            |    |    |            |         |         |            |         |         |
|        | 4.매각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5.양여 |    |            |    |    |            |         |         |            |         |         |
|        | 6.교환 |    |            |    |    |            |         |         |            |         |         |

#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격(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br>수 량<br>(㎡) |                       |                           |          |               | 주 소                     | 성 명 |    |
| 총 계       |     |    | 9필지       |     |                  | 3,144.5           | 3,144.5               | 928,172,700               |          |               |                         |     |    |
| 1<br>(토지) | 소계  |    | 6필지       |     |                  | 2,304             | 2,304                 | 743,813,200               | 2016년    | 군청사<br>주차장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br>봉동길 10 | 문영달 |    |
|           | 대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28-1           | 1,038             | 1,038                 | 283,685,400               |          |               |                         |     |    |
|           | 장   | 대  | 논공읍       | 금포리 | 1328-2           | 553               | 553                   | 263,338,600               |          |               |                         |     |    |
|           | 전   | 대  | 논공읍       | 금포리 | 1328-3           | 42                | 42                    | 17,131,800                |          |               |                         |     |    |
|           | 전   | 전  | 논공읍       | 금포리 | 1326-2           | 165               | 165                   | 43,725,000                |          |               |                         |     |    |
|           | 구   | 전  | 논공읍       | 금포리 | 1326-3           | 177               | 177                   | 46,905,000<br>(인근토지 공시지가) |          |               |                         |     |    |
|           | 전   | 전  | 논공읍       | 금포리 | 1326-4           | 329               | 329                   | 89,027,400                |          |               |                         |     |    |
| 2<br>(건물) | 소계  |    | 3필지       |     |                  | 840.5             | 840.5                 | 184,359,500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br>봉동길 10 | 문영달 |    |
|           | 대전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28-1<br>1326-2 | 561               | 561                   | 100,620,000               |          |               |                         |     |    |
|           | 장   | 대  | 논공읍       | 금포리 | 1328-2           | 195               | 195                   | 53,235,000                |          |               |                         |     |    |
|           | 장   | 대  | 논공읍       | 금포리 | 1328-2           | 84.5              | 84.5                  | 30,504,50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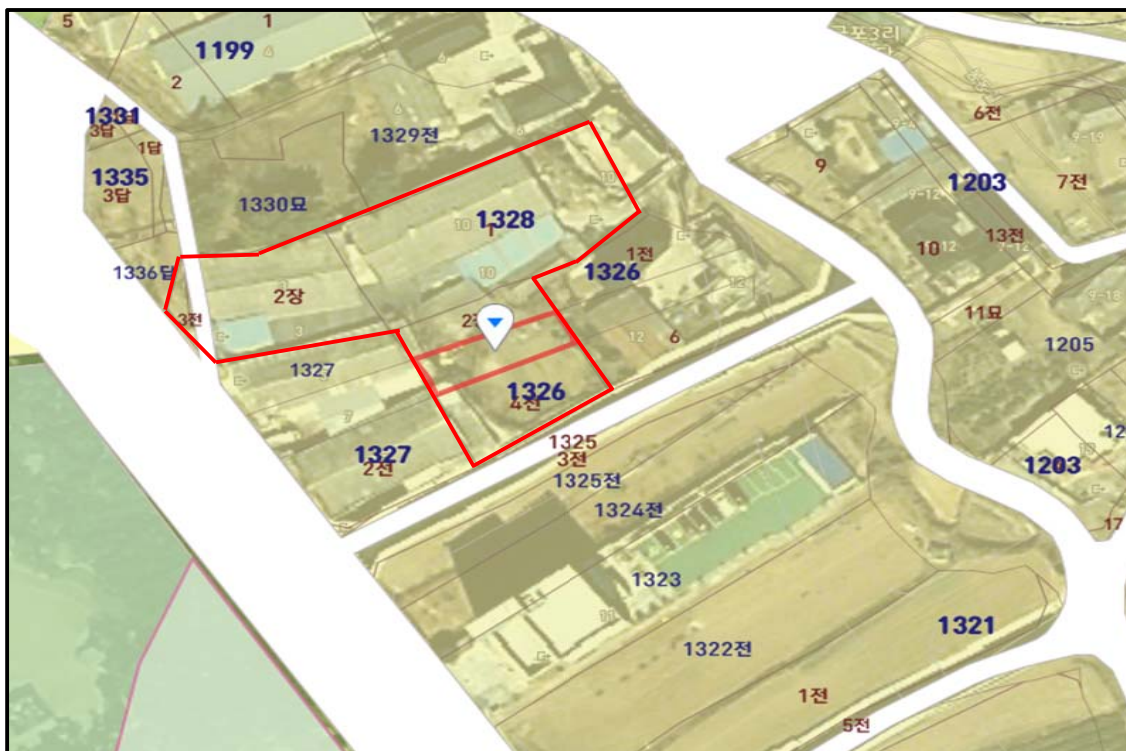
# 위 치 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28-1 등 6필지  
(관련지번 : 1328-2, 1328-3, 1326-2, 1326-3, 1326-4)



##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28-1 등 6필지  
(관련지번 : 1328-2, 1328-3, 1326-2, 1326-3, 1326-4)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군청사 주차장 확장사업은**

군정발전과 인구유입 등 행정수요 증대로 군청 방문객 및 직원들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사 준공이 2005년 4월로, 10년이 지난 현재 주차장 부족상태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부지확보는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살펴보면(토지-공시지가, 건물-건물시가)**

위치는 - 위치도참조

취득대상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참조

● 매입대상 토지·건물 전체 : 928,172천원

-토지 6필 : 2304㎡(696평) 743,813천원

-건물 3동 : 840.5㎡(254평) 184,359천원

군청사 주변이 빠른 속도로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부지 물량부족과 더불어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우리군 지역의 지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염두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하여 확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 &lt;붙임&gt;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법 제16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①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자 : 달성군수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기금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

### 3. 기금의 개요

#### (1) 기금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어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함.

## (2) 운용방침

-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금활용 극대화로 지역안정화 기능 강화
- 사회단체 중복지원 등 선심성 용도 집행 통제

## (3) 기금의 현황

| 기금명               | 설치<br>년도 |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소관부서  | 비고 |
|-------------------|----------|-----------------------------------------------------------------------------|---------------------------------------------------------------------------|-------|----|
| 보훈회관<br>건립기금      | 2009     |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br>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br>립기금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br>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주민지원과 |    |
| 자활기금              | 2001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br>층의 복지 증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br>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br>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설<br>치 및 운용 조례 | 주민지원과 |    |
| 노인복지<br>기금        | 1999     |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br>체의 건전한 육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br>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회복지과 |    |
| 장애인<br>복지기금       | 2003     |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br>참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14<br>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br>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사회복지과 |    |
| 환경보전<br>기금        | 1998     | 환경보전 개선사업의 조기달성<br>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br>및 기금적립이자의 환경개선<br>사업 투자로 환경개선효과<br>거양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br>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환 경 과 |    |
| 식품진흥<br>기금        | 2001     | 식품위생수준 및 국민영양수준<br>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br>필요한 재원 충당                           | 「식품진흥법」 제89조(식품진흥<br>기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br>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소위생과 |    |
| 재난관리<br>기금        | 2005     |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br>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br>사업 활용을 위하여 적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br>6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br>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안전방재과 |    |
| 체육진흥<br>기금        | 1999     |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체<br>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br>19조, 제20조<br>「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진흥<br>조례」 제10조              | 문화체육과 |    |
| 농업인<br>조직육성<br>기금 | 1999     |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br>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br>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확대보급<br>및 복지농촌건설에 기여코자 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br>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농촌지도과 |    |

## (4)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명         | 수 입 계 획    |         |        |           |         |         | 지 출 계 획    |                 |            |           |          |
|-------------|------------|---------|--------|-----------|---------|---------|------------|-----------------|------------|-----------|----------|
|             | 계          | 전입금     | 보조금    | 예치금<br>회수 | 이자      | 기타      | 계          | 비용자<br>성사업<br>비 | 융자성<br>사업비 | 예치금       | 기타<br>지출 |
| 계           | 10,313,676 | 926,766 | 34,100 | 9,008,099 | 150,169 | 193,742 | 10,313,676 | 989,778         | 100,000    | 9,143,698 | 80,200   |
| 보훈회관건립      | 318,000    |         |        | 296,000   | 22,000  |         | 318,000    |                 |            | 318,000   |          |
| 자활기금        | 889,737    |         |        | 794,170   | 17,025  | 77,742  | 889,737    |                 | 100,000    | 789,737   |          |
| 노인복지        | 559,315    |         |        | 551,277   | 8,038   |         | 559,315    | 8,038           |            | 551,277   |          |
| 장애인복지       | 570,826    |         |        | 562,474   | 8,352   |         | 570,826    | 11,000          |            | 559,826   |          |
| 환경보전        | 495,120    |         |        | 481,256   | 13,864  |         | 495,120    |                 |            | 495,120   |          |
| 식품진흥        | 357,001    |         | 34,100 | 201,901   | 5,000   | 116,000 | 357,001    | 59,940          |            | 216,861   | 80,200   |
| 재난관리        | 5,420,486  | 926,766 |        | 4,450,200 | 43,520  |         | 5,420,486  | 880,000         |            | 4,540,486 |          |
| 체육진흥        | 668,468    |         |        | 656,898   | 11,570  |         | 668,468    | 10,000          |            | 658,468   |          |
| 농업인조직<br>육성 | 1,034,723  |         |        | 1,013,923 | 20,800  |         | 1,034,723  | 20,800          |            | 1,013,923 |          |

(단위 : 천원)

##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 기 금 명   | '15년도말<br>조성액① | '16년도 기금운용계획 |           | '16년도말<br>조성액<br>④=①+③-② | 증 감<br>⑤=④-① |
|---------|----------------|--------------|-----------|--------------------------|--------------|
|         |                | 수입②          | 지출③       |                          |              |
| 계       | 9,008,099      | 1,305,577    | 1,169,978 | 9,143,698                | 135,599      |
| 보훈회관건립  | 296,000        | 22,000       | 0         | 318,000                  | 22,000       |
| 자활기금    | 794,170        | 95,567       | 100,000   | 789,737                  | △4,433       |
| 노인복지    | 551,277        | 8,038        | 8,038     | 551,277                  | 0            |
| 장애인복지   | 562,474        | 8,352        | 11,000    | 559,826                  | △2,648       |
| 환경보전    | 481,256        | 13,864       | 0         | 495,120                  | 13,864       |
| 식품진흥    | 201,901        | 155,100      | 140,140   | 216,861                  | 14,960       |
| 재난관리    | 4,450,200      | 970,286      | 880,000   | 4,540,486                | 90,286       |
| 체육진흥    | 656,898        | 11,570       | 10,000    | 658,468                  | 1,570        |
| 농업인조직육성 | 1,013,923      | 20,800       | 20,800    | 1,013,923                | 0            |

## (6) 기금별 주요내용

## □ 보훈회관 건립기금

##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및 가족

## ○ 2016년 주요사업

- 보훈회관 건립 완공 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예정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말<br>현재액 | 2015년도말<br>현재액① | 2016년도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대구은행   | 2,198,158      | 296,000         | 318,000         | 22,000       |    |

## □ 자활기금

## ○ 지원대상

- 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군에 소재를 둔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 ○ 2016년 주요사업

- 점포세 임대 용자 100,000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말<br>현재액 | 2015년도말<br>현재액① | 2016도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대구은행   | 762,954        | 794,170         | 789,737        | △4,433       |    |

## □ 노인복지기금

###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

### ○ 2016년 주요사업

-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280개소) 5,320천원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지원 2,718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 말<br>현재액 | 2015년도 말<br>현재액① | 2016년도 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대구은행   | 551,706         | 551,277          | 551,277          | 0            |    |

## □ 장애인 복지기금

### ○ 지원대상

- 관내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 2016년 주요사업

-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및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1,000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 말<br>현재액 | 2015년도 말<br>현재액① | 2016년도 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농협     | 565,256         | 562,474          | 559,826          | △2,648       |    |

## □ 환경보전기금

### ○ 지원대상

- 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대기, 수질 등의 환경개선사업
- 민간단체의 환경개선사업 등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한 사업 지원

### ○ 2016년 주요사업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 지원(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예정)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 말<br>현재액 | 2015년도 말<br>현재액① | 2016년도 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대구은행   | 481,256         | 481,256          | 495,120          | 13,864       |    |

## □ 식품진흥기금

###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 ○ 2016년 주요사업

- 모범음식점 지원 (96개소) 9,6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관련 홍보물 등 2,300천원
- 제5회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지원 40,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지정업소 대상 저염식 요리강습 7,000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 말<br>현재액 | 2015년도 말<br>현재액 ㉠ | 2016년도 말<br>현재액 ㉢ | 증 감<br>(㉢-㉠) |      |
| 합 계 |        | 182,991         | 201,901           | 216,861           | 14,960       |      |
| 예치금 | 소계     | 182,991         | 201,901           | 216,861           | 14,960       |      |
|     | 대구은행   | 90,000          | 90,000            | 90,000            | 0            | 정기예금 |
|     | 대구은행   | 92,991          | 111,901           | 126,861           | 14,960       | 보통예금 |

## □ 재난관리기금

### ○ 지원대상

- 재원 : 최근 3년간 지방세(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 달성군 전 지역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복구사업에 활용

### ○ 2016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홍보(팜플렛, 현수막 등)제작 1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300,000천원
-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540,000천원
- 시설장비 구입 30,000천원, 예치금 4,540,486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말<br>현재액 | 2015년도말<br>현재액① | 2016년도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합 계 |        | 4,266,043      | 4,450,200       | 4,540,486       | 90,286       |          |
| 예치금 | 소계     | 4,266,043      | 4,450,200       | 4,540,486       | 90,286       |          |
|     | 대구은행   | 500,000        | 500,000         | 500,000         | 0            | 정기예금(3년) |
|     | 대구은행   | 1,000,000      | 1,000,000       | 1,000,000       | 0            | 정기예금(2년) |
|     | 대구은행   | 1,000,000      | 1,000,000       | 1,000,000       | 0            | 정기예금(1년) |
|     | 대구은행   | 300,000        | 300,000         | 300,000         | 0            | 정기예금(6월) |
|     | 대구은행   | 500,000        | 500,000         | 500,000         | 0            | 정기예금(2년) |
|     | 대구은행   | 466,043        | 650,200         | 740,486         | 90,286       | 보통예금     |
|     | 대구은행   | 500,000        | 500,000         | 500,000         | 0            | 정기예금(1년) |

## □ 체육진흥기금

### ○ 지원대상

- 지역체육진흥,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유소년 축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종목 중점 육성,  
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 2016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 10,000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말<br>현재액 | 2015년도말<br>현재액① | 2016년도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농협     | 650,898        | 656,898         | 658,468         | 1,570        |    |

## □ 농업인조직육성기금

### ○ 지원대상

- 4-H회원 등 관련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육성

### ○ 2016년 주요사업

-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차량임대 5,400천원
- 4-H 회원 장학금 지원 1,000천원, 청소년 교육행사 지원 3,450천원
- 농업경영인 농업현장컨설팅 보상 4,140천원
- 4-H 지도교사 연찬 보상 및 급식 1,440천원
- 생활개선회 리더십 함양 교육 참가자 보상 4,320천원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14년도말<br>현재액 | 2015년도말<br>현재액① | 2016년도말<br>현재액② | 증 감<br>(②-①) |    |
| 예치금 | 농협     | 1,013,923      | 1,013,923       | 1,013,923       | 0            |    |

##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2016년도 달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9개 기금에 대해 운용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타 군구의 기금운용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6, 동구3, 서구6, 남구5, 북구5, 수성5, 달서4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군이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군의 9개기금중 타구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4개종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으며,  
우리군에서만 유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5개종으로 보훈회관 건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이 있습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검토하고,  
기금 「일몰제도」 이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현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낮아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기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특정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의 필요성이 부족한 기금과 일반 예산으로 편성·운용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 3. 제안이유

- 201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 15,512천원
  -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전담 기관인 지방세연구원 설립
  -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 운영
  - 출연금 산출 기초

| 구 분                           | 산 출 식                 | 산출금액      |
|-------------------------------|-----------------------|-----------|
|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br>1만분의 1.5 | 103,411,289천 원*0.015% | 15,512천 원 |

##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붙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 출연 심의요구서

|         |                                                                                                      |       |           |           |        |    |    |        |    |
|---------|------------------------------------------------------------------------------------------------------|-------|-----------|-----------|--------|----|----|--------|----|
| 기관명     | 지방세연구원                                                                                               |       |           |           |        |    |    |        |    |
| 출 연 대 상 | ○ 대 표 : 허동훈<br>○ 일반현황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여의도동)                                                  |       |           |           |        |    |    |        |    |
| 출 연 사업비 | ○ 출연 예정금액 : 15,512천원(군비 15,512천원)<br>○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        |    |
|         | (단위 : 천원)                                                                                            |       |           |           |        |    |    |        |    |
|         | 구 분                                                                                                  | 사업 기간 | 2015년 예산액 | 2016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 계      |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016년 | 13,810    | 15,512    | 15,512 |    |    | 15,512 |    |
| 출 연 필요성 | ○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br>○ 신규 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           |           |        |    |    |        |    |
|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b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           |           |        |    |    |        |    |
| 사업부서의견  |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세 발전 연구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       |           |           |        |    |    |        |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1. 2014년도 경영평가 및 결산감사 의견(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 2014년도 사업 평가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14년에 처음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일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창출
- 연구 수행 시에 시·도 연구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 연구를 활성화 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원의 역량 제고

#### ○ 2014년도 결산 감사

- '14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사전에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짐
-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연구원의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짐

###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필요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지방세 제도 연구 및 교육 등이 향후 지자체의 세수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기에 출연이 필요

## 출연기관 현황

|                        |                                                                                                              |       |                |       |                          |                        |       |
|------------------------|--------------------------------------------------------------------------------------------------------------|-------|----------------|-------|--------------------------|------------------------|-------|
| 기 관 명                  | 지방세연구원                                                                                                       |       |                |       | 전화번호                     | 02-2071-2725           |       |
|                        |                                                                                                              |       |                |       | 홈페이지                     | http://www.kilf.re.kr  |       |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       |                |       |                          |                        |       |
| 주요연혁                   | <div>- 2011년 4월 개원</div> <div>- 2012년 지방세포럼 간행물 창간 및 정책포럼 시행</div>                                           |       |                |       |                          |                        |       |
| 임원<br>(15.9.1<br>현 재)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 임기                     |       |
|                        | 이 사 장                                                                                                        | 허남식   | (전)부산광역시장      |       |                          | 2014.03.28~2017.03.27  |       |
|                        | 부이사장                                                                                                         | 박병중   | 고흥군수           |       |                          | 2015.02.28~2016.02.27  |       |
|                        | 원 장                                                                                                          | 허동훈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                          | 2014.04.15.~2017.04.14 |       |
|                        | 이 사                                                                                                          | 김장주   |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       |                          | 당연직                    |       |
|                        | 이 사                                                                                                          | 박재민   |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류임철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김명선   |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이강오   | 전라북도 자치안전국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이호덕   | 대전 동구 부구청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김학철   | 강릉시 부시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정연재   | 통영시 부시장        |       |                          | 2015.02.28~2016.02.27  |       |
|                        | 이 사                                                                                                          | 박완규   | 중앙대 교수         |       |                          | 2015.02.28~2017.02.27  |       |
|                        | 감 사                                                                                                          | 이동혁   | 행자부 지방세정책과장    |       |                          | 당연직                    |       |
| 주요기능                   | <div>○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div> <div>○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div> <div>○지방 정부의 세제·재정 전문가 양성 교육</div> |       |                |       |                          |                        |       |
| 최근3년간<br>예산현황<br>(백만원) |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재무현황<br>2014.12.31<br>기준 | 자산                     | 5,380 |
|                        | 예산액                                                                                                          | 7,625 | 8,315          | 7,518 |                          | 부채                     | 212   |
|                        | 지자체<br>지원액                                                                                                   | 6,587 | 7,712          | 7,198 |                          | 자본                     | 5,168 |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항에 명시함.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을 의무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발전기금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2호에 규정함.

-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세발전기금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제도연구 및 교육과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 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 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

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제안이유

- 201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 385백만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로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 5. 관계법령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붙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 출연 심의요구서

| 출 연 대 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li><li>○ 대 표 : 서정길(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li><li>○ 일반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li><li>- 기본자산 : 20억원(달성군 출연금)</li><li>- 주요사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설운영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6개 수탁시설</li><li>· 모금사업 :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나눔 캠페인</li><li>· 배분사업 : 지정·결연 후원, 주거환경개선 등 저소득 가정 지원</li><li>· 기획사업 : 안경지원, 높이뛰기 희망운동화 지원 등</li></ul></li></ul></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 사업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출연 예정금액 : 385백만원(군비)</li><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ul>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5년 예산액</th><th rowspan="2">2016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인건비</td><td>2016.01.01~12.31</td><td>174</td><td>218</td><td>218</td><td></td><td></td><td>218</td><td></td></tr><tr><td>경상비</td><td>2016.01.01~12.31</td><td>91</td><td>126</td><td>126</td><td></td><td></td><td>126</td><td></td></tr><tr><td>시설지원사업</td><td>2016.01.01~12.31</td><td>0</td><td>41</td><td>41</td><td></td><td></td><td>41</td><td></td></tr></table> | 구 분 | 사업 기간 | 2015년 예산액 | 2016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계 |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인건비 | 2016.01.01~12.31 | 174 | 218 | 218 |  |  | 218 |  | 경상비 | 2016.01.01~12.31 | 91 | 126 | 126 |  |  | 126 |  | 시설지원사업 | 2016.01.01~12.31 | 0 | 41 | 41 |  |  | 41 |  |
| 구 분     | 사업 기간                                                                                                                                                                                                                                                                                                                                                                                                                                                                                                                                                                                                                                                                                                 |     |       |           |           | 2015년 예산액 | 2016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국비    | 시비        | 군비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 2016.01.01~12.31                                                                                                                                                                                                                                                                                                                                                                                                                                                                                                                                                                                                                                                                                      | 174 | 218   | 218       |           |           |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비     | 2016.01.01~12.31                                                                                                                                                                                                                                                                                                                                                                                                                                                                                                                                                                                                                                                                                      | 91  | 126   | 126       |           |           | 1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지원사업  | 2016.01.01~12.31                                                                                                                                                                                                                                                                                                                                                                                                                                                                                                                                                                                                                                                                                      | 0   | 41    | 41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li><li>- 모금 및 배분사업, 저소득층 지원 기획사업 등 수행</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0조(재정 지원)</li></ul></li><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11조(출연금 교부)</li></ul></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사업부서의 견<br/>(총평)</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경영실적(2014년 실적)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실정에 맞는 모금, 배분, 시설운영 및 기타사업 강화와 재단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A등급(91점)으로 평가되었으며,</li> </ul> </li> <li>○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li> <li>○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li> </ul> <p>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경제기획연구원, '15.6.23~9.20)
  - 2015년(2014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점)

| 평가 분야  | 평가 배점(%) | 평가 점수(%) |
|--------|----------|----------|
| 경영분야   | 45.0     | 40.518   |
| 사업분야   | 30.0     | 27.450   |
| 고객만족분야 | 15.0     | 13.521   |
| 자율성과지표 | 10.0     | 10.000   |
| 총점     | 100.0    | 91.489   |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외부 감사)
  - 지도점검('14.1월) : 예산회계관련 등 12건(기관경고 1, 주의 10, 개선 1)
  - 재무감사('14.10월) : 감사결과 처분 10건(추징·회수 4, 주의 6)

###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16년 출연금 385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회계전문 신규직원 채용, 배분사업용 차량 구입비 등 증액
  - 지역연계사업, 시설지원사업 등 사업비 증액

###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br>결산액 | 2015년<br>예산액(최종)<br>(A) | 2016년 예산(안)  |              |             |                  |
|------------|--------------|-------------------------|--------------|--------------|-------------|------------------|
|            |              |                         | 기관<br>요구액(B) | 부서<br>검토액(C) | 증감<br>(C-B) | 전년대비<br>증감액(C-A) |
| 총 계        | 200          | 265                     | 385          | 385          | 0           | 120              |
| 기관운영비      | 200          | 265                     | 344          | 344          | 0           | 79               |
| 인건비        | 178          | 174                     | 218          | 218          | 0           | 44               |
| 경상비        | 22           | 91                      | 126          | 126          | 0           | 35               |
| 사업비        | -            | -                       | 41           | 41           | 0           | 41               |
| 시설지원<br>사업 | -            | -                       | 41           | 41           | 0           | 41               |

## 출연기관 현황

|                       |                                                                             |                                                                                                                                                             |              |              |                          |                       |          |
|-----------------------|-----------------------------------------------------------------------------|-------------------------------------------------------------------------------------------------------------------------------------------------------------|--------------|--------------|--------------------------|-----------------------|----------|
| 기 관 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              |              | 전화번호                     | 617-9200              |          |
|                       |                                                                             |                                                                                                                                                             |              |              | 홈페이지                     | www.dswelfare.kr      |          |
|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8.10.15                                                           |                                                                                                                                                             |              |              |                          |                       |          |
| 임원<br>(15.9.1<br>현 재)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 임기                    |          |
|                       | 대표이사<br>(비상임)                                                               | 서정길                                                                                                                                                         | 前달성군 안전행정국장  |              |                          | 2015.6.23~2016.10.28  |          |
|                       | 비상임이사                                                                       | 김병용                                                                                                                                                         |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김성제                                                                                                                                                         |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김용범                                                                                                                                                         | 영진전문대학 교수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정덕표                                                                                                                                                         | 한패밀리병원 이사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정우선                                                                                                                                                         | 달성군장애인복지관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김태호                                                                                                                                                         | 큰나무집 식당 대표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진덕수                                                                                                                                                         | 덕수복지재단 이사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전영희                                                                                                                                                         | 가창어린이집 원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이사                                                                       | 김상근                                                                                                                                                         | 수경복지재단 이사장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감사                                                                       | 김대근                                                                                                                                                         | 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 |              |                          | 2014.10.28~2016.10.27 |          |
|                       | 비상임감사                                                                       | 송정준                                                                                                                                                         | 경산시어르신복지관 관장 |              |                          | 2014.10.28~2016.10.27 |          |
|                       | 주요기능                                                                        |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br>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br>○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br>○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br>○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br>○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br>○ 복지시설 위수탁 사업 |              |              |                          |                       |          |
| 최근3년간<br>예산현황         |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재무현황<br>2014.12.31<br>기준 | 자산                    | 2,216백만원 |
|                       | 예산액                                                                         | 1,985<br>백만원                                                                                                                                                | 1,149<br>백만원 | 1,092<br>백만원 |                          | 부채                    | 6백만원     |
|                       | 지자체<br>지원액                                                                  | 120<br>백만원                                                                                                                                                  | 200<br>백만원   | 265<br>백만원   |                          | 자본                    | 2,210백만원 |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을 말씀드리면,

- 달성복지재단은 2008.10.15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음.  
제1조 목적, 제4조 재단의 사업, 제6조 정관, 제11조에는 출연금 교부  
등을 명시.
-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개 부문으로 시설운영사업, 모금사업,  
배분사업, 기획사업으로 구분되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설수탁운영 사업으로 16개 시설에 대해 수  
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비롯해 달성군청소년  
센터, 달성군노인복지센터,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달성군자원봉사  
센터, 달성시니어클럽, 건가/다가 통합시범운영센터, 다사보호작업  
장 등이 있음.
- 2016년 출연사업 예정금액은 385백만원으로 2015년도 265백만원 보  
다 120백만원 증액된 계획이며 주된 증액 사유는 인건비(56%) 요인  
이 가장 큰 비중을 보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  
고자 함.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 관계법령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3. 제안이유

- 201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금500백만원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백만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500백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재 발굴, 양성

###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 출연 심의요구서

| 출 연 대 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li><li>○ 대 표 : 김 문 오</li><li>○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li><li>○ 기본재산 : 7,531,420천원</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 사업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출연 예정금액 : 5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li><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ul>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5년 예산액</th><th rowspan="2">2016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16 1~12월</td><td>5억원</td><td>5억 원</td><td>5억원</td><td>-</td><td>-</td><td>5억원</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           |       |    |    |     |    |  | 구 분 | 사업 기간 | 2015년 예산액 | 2016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계 |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 16 1~12월 | 5억원 | 5억 원 | 5억원 | - | - | 5억원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사업 기간                                                                                                                                                                                                                                                                                                                                                                                                                                                                                                                                                                                                                                                         | 2015년 예산액 | 2016년 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 16 1~12월                                                                                                                                                                                                                                                                                                                                                                                                                                                                                                                                                                                                                                                      | 5억원       | 5억 원      | 5억원   | -  | -  | 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li><li>○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로 장학기금이 부족하여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됨.</li><li>※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li><l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li><li>○ 지방재정법</li><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부서의 견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날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증자 등 장학기금 마련이 필요함.</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기관운영 및 사업평가)
  - 경영평가 대상 제외 기관으로 해당사항 없음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500백만원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00백만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함.

###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br>출연액 | 2015년<br>예산액(최종)<br>(A) | 2016년 예산(안)  |                  |             |                      |
|------------------|--------------|-------------------------|--------------|------------------|-------------|----------------------|
|                  |              |                         | 기관<br>요구액(B) | 부서<br>검토액<br>(C) | 증감<br>(C-B) | 전년대비<br>증감액<br>(C-A) |
| 총 계              |              |                         |              |                  |             |                      |
| 기관운영비            | 해            | 당                       | 사            | 항                | 없           | 음                    |
| 인건비              |              |                         |              |                  |             |                      |
| 경상비              |              |                         |              |                  |             |                      |
| 사업비              |              |                         |              |                  |             |                      |
| 장학사업<br>(기본재산증자) | 500          | 500                     | 500          | 500              | 0           | 0                    |
|                  |              |                         |              |                  |             |                      |
|                  |              |                         |              |                  |             |                      |

## 출연기관 현황

|                       |                                                                                                                                |               |                 |        |                          |                       |          |
|-----------------------|--------------------------------------------------------------------------------------------------------------------------------|---------------|-----------------|--------|--------------------------|-----------------------|----------|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                 |        | 전화번호                     | 053-668-3274          |          |
|                       |                                                                                                                                |               |                 |        | 홈페이지                     | 없음                    |          |
|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br>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0년<br>설립허가년월일 : 2000.04.04<br>법인성립년월일 : 2000.04.26                                                                   |               |                 |        |                          |                       |          |
| 임원<br>(15.9.1<br>현 재)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 임기                    |          |
|                       | 이사장                                                                                                                            | 김문오           | 달성군수(당연직)       |        |                          | 2010.07.01 ~ 재임기간     |          |
|                       | 비상임이사                                                                                                                          | 박을규           |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당연직) |        |                          | 2015.09.01 ~ 재임기간     |          |
|                       | 비상임이사                                                                                                                          | 송준연           |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        |                          | 2013.04.30 ~ 재임기간     |          |
|                       | 비상임이사                                                                                                                          | 김길중           | 자동차보험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김성제           | 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회장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신창섭           | 자영업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김동조           | 가창면이장협의회회장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이대현           | 농업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박명규           |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서정우           | 前 달성군의원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김종식           | 前 민주평동자문위원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박지팔           |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        |                          | 2012.12.24~2016.12.23 |          |
|                       | 비상임이사                                                                                                                          | 정태일           | 前 시의원           |        |                          | 2011.06.21~2019.06.20 |          |
|                       | 비상임감사                                                                                                                          | 채수열           | 前 현풍고 행정실장      |        |                          | 2013.06.21~2017.06.20 |          |
| 비상임감사                 | 김대환                                                                                                                            |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                 |        | 2015.01.01 ~ 재직기간        |                       |          |
| 주요기능                  |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최근3년간<br>예산현황         |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재무현황<br>2014.12.31<br>기준 | 자산                    | 7,219백만원 |
|                       | 예산액                                                                                                                            | 1,497백만원      | 954백만원          | 912백만원 |                          | 부채                    | -        |
|                       | 지자체<br>지원액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 자본                    | 7,219백만원 |

- ※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장학재단은 2000년 4월에 법인설립 되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75억 3천만원이 있으며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규정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대상사업에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각 매년 5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이번에 접수된 출연금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 출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억원 규모입니다.

- 지역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최근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기본재산의 증자를 위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제안이유

- 201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463백만원
  -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1,645백만원
  - 재단 출범 5년을 맞이하여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특히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100대 피아노콘서트의 경우 달성군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홍보 및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
- (재)달성문화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출연 : 금2,000백만원
  - ※ 연도별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총 4,000백만원)
    - 2011 : 2,000백만원
    - 2013 : 1,000백만원
    - 2015 : 1,000백만원

##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문화예술진흥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4,108백만원 (군비 4,108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br>기간 | 2015년<br>예산액 | 2016년<br>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 계     |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 인건비              | 1~12월    | 567          | 320          | 320   | -  | -  | 320 | -  |
| 경상비              | 1~12월    | 134          | 143          | 143   | -  | -  | 143 | -  |
| 달성군립<br>합창단      | 1~12월    | 58           | 65           | 65    | -  | -  | 65  | -  |
| 책자발간사업           | -        | 50           | -            | -     | -  | -  | -   | -  |
| 강정대구현대<br>미술제    | 8~9월중    | 232          | 350          | 350   | -  | -  | 350 | -  |
| 기획공연             | 연중       | 130          | 150          | 150   | -  | -  | 150 | -  |
| 옛서적 등<br>자료수집 사업 | 연중       | -            | 50           | 50    | -  | -  | 50  | -  |
| 100대<br>피아노콘서트   | 10월      | 350          | 400          | 400   | -  | -  | 400 | -  |
| 달성백서발간<br>사업     | -        | 363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br>사업비         | 달성깃발제                                                                                                                                                                                                                                                                         | 10월 | 53    | 80    | 80    | - | - | 80    | - |
|                    | 달성스토리텔링출판사업                                                                                                                                                                                                                                                                   | 연중  | 80    | 200   | 200   | - | - | 200   | - |
|                    | 달성음악회                                                                                                                                                                                                                                                                         | 연중  | 150   | 180   | 180   | - | - | 180   | - |
|                    | 달성문화계간지                                                                                                                                                                                                                                                                       | 연중  | -     | 80    | 80    | - | - | 80    | - |
|                    | 성악중창페스티벌                                                                                                                                                                                                                                                                      | 12월 | 90    | 90    | 90    | - | - | 90    | - |
|                    | 달성의전설조형물사업                                                                                                                                                                                                                                                                    | -   | 135   | -     | -     | - | - | -     | - |
|                    | 기본재산적립금                                                                                                                                                                                                                                                                       | -   | 1,000 | 2,000 | 2,000 | - | - | 2,000 | - |
| 출 연<br>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li> <li>○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li> </ul>                                                                                                              |     |       |       |       |   |   |       |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li> <li>○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li> </ul> |     |       |       |       |   |   |       |   |
| 사업부서의<br>견<br>(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li> <li>○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li> <li>○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li> </ul>                                                                                                                        |     |       |       |       |   |   |       |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경제기획연구원, '15.6.23 ~ 9.20)
  - 2015년(2014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B등급(87점)

| 평가 분야  | 평가 배점(%) | 평가 점수(%) |
|--------|----------|----------|
| 경영분야   | 45.0     | 38.722   |
| 사업분야   | 30.0     | 26.250   |
| 고객만족분야 | 15.0     | 12.859   |
| 자율성과지표 | 10.0     | 10.000   |
| 총점     | 100.0    | 87.831   |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외부 감사)
  - 지도점검('14.1월) : 예산회계검사 4건(시정 4)
  - 재무감사('14.11월) : 감사결과 처분 12건(시정 8, 주의 4)

###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16년 출연금 4,108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63백만원
  - 100대 피아노콘서트 등 자체사업비 1,645백만원
  - 기본재산 적립금 2,000백만원

##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br>결산액 | 2015년<br>예산액<br>(최종)<br>(A) | 2016년 예산(안)      |                  |             |                      |
|----------------|--------------|-----------------------------|------------------|------------------|-------------|----------------------|
|                |              |                             | 기관<br>요구액<br>(B) | 부서<br>검토액<br>(C) | 증감<br>(C-B) | 전년대비<br>증감액<br>(C-A) |
| 총 계            | 2,338        | 4,053                       | 4,698            | 4,108            | △590        | 55                   |
| 기관운영비          | 600          | 701                         | 773              | 463              | △311        | △239                 |
| 인건비            | 443          | 567                         | 631              | 320              | △311        | △247                 |
| 경상비            | 157          | 134                         | 143              | 143              | -           | 9                    |
| 자체사업비          | 1,212        | 1,691                       | 1,925            | 1,645            | △280        | △46                  |
| 달성군립합창단        | 62           | 58                          | 65               | 65               | -           | 7                    |
| 책자발간사업         | 50           | 50                          | -                | -                | -           | △50                  |
| 강정대구현대미술제      | 225          | 232                         | 480              | 350              | △130        | 118                  |
| 달성소리찾기         | 20           | -                           | -                | -                | -           | -                    |
| 달성예술꽃마차        | 50           | -                           | -                | -                | -           | -                    |
| 기획공연           | 100          | 130                         | 150              | 150              | -           | 20                   |
| 옛서적 등 자료 수집 사업 | -            | -                           | 50               | 50               | -           | 50                   |
| 100대 피아노 콘서트   | 297          | 350                         | 450              | 400              | △50         | 50                   |
| 달성백서발간사업       | 407          | 363                         | -                | -                | -           | △363                 |
| 달성깃발제          | -            | 53                          | 120              | 80               | △40         | 27                   |
| 달성스토리텔링출판사업    | -            | 80                          | 200              | 200              | -           | 120                  |
| 달성음악회          | -            | 150                         | 240              | 180              | △60         | 30                   |
| 달성문화계간지        | -            | -                           | 80               | 80               | -           | 80                   |
| 성악중창페스티벌       | -            | 90                          | 90               | 90               | -           | -                    |
| 달성의전설조형물사업     | -            | 135                         | -                | -                | -           | △135                 |
| 보조사업비          | 525          | 650                         | -                | -                | -           | △650                 |
| 기본재산적립금        | -            | 1,000                       | 2,000            | 2,000            | -           | 1,000                |
| 예비비            | -            | 10                          | -                | -                | -           | △10                  |

## 출연기관 현황

|                       |                                                                                                       |       |                  |       |                          |                 |          |
|-----------------------|-------------------------------------------------------------------------------------------------------|-------|------------------|-------|--------------------------|-----------------|----------|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                  |       | 전화번호                     | 053.715.1282    |          |
|                       |                                                                                                       |       |                  |       | 홈페이지                     | www.dsart.or.kr |          |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주요연혁                  | 2011.05.17. 등기                                                                                        |       |                  |       |                          |                 |          |
| 임원<br>(15.9.1<br>현 재)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 임기              |          |
|                       | 이사장                                                                                                   | 김문오   | 달성군수             |       |                          | 2014.06.26. -   |          |
|                       | 대표이사                                                                                                  | 김채한   | 매일신문 대기자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최상진   | 달성군 정책사업과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서규원   | 한국예총대구지회 고문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차준용   | 달성문화원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김성제   | 달성군 자연보호협의회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최현묵   |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송준연   |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이재운   | 영남일보 편집국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김호경   | 포산고 교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김정화   | 계명문화대학 교수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송정택   | 사단법인 비움서예포럼 이사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류영철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교수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장혜이   | 서재휴먼시아어린이집 원장    |       |                          | 2014.06.26. -   |          |
|                       | 비상임이사                                                                                                 | 김상화   | 유도회 달성군지부장       |       |                          | 2014.06.26. -   |          |
|                       | 감사                                                                                                    | 최삼태   | 세무사              |       |                          | 2014.06.26. -   |          |
|                       | 감사                                                                                                    | 김외식   |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       |                          | 2014.06.26. -   |          |
| 주요기능                  |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br>○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br>○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br>○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       |                  |       |                          |                 |          |
| 최근3년간<br>예산현황         |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재무현황<br>2014.12.31<br>기준 | 자산              | 4,039백만원 |
|                       | 예산액                                                                                                   | 3,992 | 2,922            | 4,724 |                          | 부채              | 225백만원   |
|                       | 지자체<br>지원액                                                                                            | 3,046 | 1,781            | 3,374 |                          | 자본              | 3,814백만원 |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문화재단은 2011년 5월에 설립등기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설립 및 운영기준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달성문화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 **출연금 계획을 살펴보면 총 4,108백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등에 463백만원,  
문화예술 정책사업비에 1,645백만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00백만원입니다.  
최근 연도별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11년 20억원, 2013년 10억원, 2015년 10억원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 **재단출범 5주년을 맞아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추구하며**  
우리군의 위상제고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의 출연 계획은  
「출연금 검토 상세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정하고 필요한 예산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